

서울특별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22. 7. 25.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목 차

| | |
|---------------------------|----|
| I. 심사경과 | 1 |
| II. 제안이유 | 1 |
| III. 예산안 편성규모 | 2 |
| 1. 예산안 개요 | 2 |
| 2. 세입예산안 | 3 |
| 3. 세출예산안 | 4 |
| IV. 검토의견 | 5 |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5 |
| 2. 주요 검토의견 | 5 |
| 가. 총괄 검토 | 5 |
| 나.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 | 7 |
| 1) 이전수입 | 7 |
|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7 |
| 나) 자치단체이전수입 | 10 |
| 다) 기타이전수입 | 12 |
| 2) 자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 13 |
| 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 16 |
| 1) 세출예산 총괄 | 11 |
| 2) 인건비 | 17 |
| 3) 경상비 | 19 |
| 4) 사업비 | 20 |
| 3) 재무활동 | 24 |
| 라. 실·국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 | 28 |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29 |
|----------|----|

2022년 7월 25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2년 7월 14일
3. 상정일자 :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2년 7월 25일 상정, 보류)

II. 제안이유

- 2022. 보통교부금 확정 · 추가 교부 및 2022. 정부 추경 등의 영향으로 세입이 증액되었고, 회복하는 교실, 미래와의 만남, 건강한 학생, 안전한 학교, 안정적인 미래교육 전환 및 질 높은 안전 환경 제공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III. 예산안 편성규모

1.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추경예산 | | 기정예산 (B) | 증감내역 | |
|--------------|-------------|-------------------|--------------|-------------------|------------------|-------------|
| | | 금액(A) | 비율 | | 금액(A-B) | 비율 |
| 총 규 모 | | 14,373,020 | 100.0 | 10,639,264 | 3,733,756 | 35.1 |
| 세 입 | 중앙정부이전수입 | 8,573,257 | 59.7 | 6,117,140 | 2,456,117 | 40.2 |
| | 자치단체이전수입 | 5,134,203 | 35.8 | 4,067,134 | 1,067,069 | 26.2 |
| | 기 타 이 전 수 입 | 17,112 | 0.1 | 8,732 | 8,380 | 96.0 |
| | 자 체 수 입 | 177,109 | 1.3 | 112,012 | 65,097 | 58.1 |
| | 전 년 도 이 월 금 | 461,269 | 3.0 | 324,342 | 136,927 | 42.2 |
| | 금 용 자 산 회 수 | 10,070 | 0.1 | 9,904 | 166 | 1.7 |
| 세 출 | 인 건 비 | 6,558,859 | 45.6 | 6,528,379 | 30,480 | 0.5 |
| | 교육행정기관운영비 | 36,417 | 0.3 | 33,000 | 3,417 | 10.4 |
| | 학 교 운 영 비 | 985,688 | 6.9 | 879,692 | 105,996 | 12.0 |
| | 교 육 사 업 비 | 2,823,865 | 19.7 | 2,312,866 | 510,999 | 22.1 |
| | 시 설 사 업 비 | 1,053,472 | 7.3 | 744,624 | 308,848 | 41.5 |
| | 재 무 활 동 | 2,851,348 | 19.8 | 130,614 | 2,720,734 | 2,083.0 |
| | 예 비 비 및 기 타 | 63,371 | 0.4 | 10,089 | 53,282 | 528.1 |

2.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 구 | 분 | 추경예산 | | 기정예산 | 증감내역 | | | | | |
|--------------------------------------|--------------------|-------------------|------------------|-------------------|------------------|----------------|------------------|----------------|----------------|----------------|
| | | 금액 | 비율 | | 증감액 | 비율 | 일반재원 | 목적지정 | | |
| | | | | | | | | 추경 | 우선확정 | |
| 합 계 | | 14,373,020 | 100 | 10,639,264 | 3,733,756 | 35.1 | 3,326,535 | 33,097 | 374,124 | |
| 중앙 부 이 전 수 입 | 보 통 교 부 금 | 7,589,590 | 52.8 | 5,302,603 | 2,286,987 | 43.1 | 2,286,987 | 0 | 0 | |
| | 특 별 교 부 금 | 166,351 | 1.2 | 106,518 | 59,833 | 56.2 | 0 | △945 | 60,778 | |
| | 증 액 교 부 금 | 162,317 | 1.1 | 162,317 | 0 | 0.0 | 0 | 0 | 0 | |
| | 국 고 보 조 금 | 98,659 | 0.7 | 23,328 | 75,331 | 322.9 | 0 | △649 | 75,980 | |
| | 특별회계전입금 | 556,340 | 3.9 | 522,374 | 33,966 | 6.5 | 0 | 33,966 | 0 | |
| | 계 | 8,573,257 | 59.7 | 6,117,140 | 2,456,117 | 40.2 | 2,286,987 | 32,372 | 136,758 | |
|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 법 정 | 지 방 교 육 세 | 2,224,857 | 15.5 | 1,966,277 | 258,580 | 13.2 | 258,580 | 0 | 0 |
| | | 담 배 소 비 세 | 281,202 | 2.0 | 257,189 | 24,013 | 9.3 | 24,013 | 0 | 0 |
| | | 시 도 세 | 2,211,744 | 15.4 | 1,662,994 | 548,750 | 33.0 | 548,750 | 0 | 0 |
| | | 합 부 교 담 용 지 금 | 1,995 | 0.0 | 1,995 | 0 | 0.0 | 0 | 0 | 0 |
| | | 지 방 교 육 증 액 전 금 | 102,610 | 0.7 | 96,595 | 6,015 | 6.2 | 6,015 | 0 | 0 |
| | | 교육급여보조금 | 9,220 | 0.1 | 9,653 | △433 | △4.5 | 0 | △433 | 0 |
| | | 무 상 교 육 경 비 금 | 15,034 | 0.1 | 15,034 | 0 | 0.0 | 0 | 0 | 0 |
| | | 소계 | 4,846,662 | 33.8 | 4,009,737 | 836,925 | 20.9 | 837,358 | △433 | 0 |
| | 비 법 정 | 광역자치단체 | 183,468 | 1.3 | 44,605 | 138,863 | 311.3 | 0 | △1,112 | 139,975 |
| | | 기초자치단체 | 104,073 | 0.7 | 12,792 | 91,281 | 713.6 | 0 | △84 | 91,365 |
| | | 소계 | 287,541 | 2.0 | 57,397 | 230,144 | 401.0 | 0 | △1,196 | 231,340 |
| | 계 | 5,134,203 | 35.8 | 4,067,134 | 1,067,069 | 26.2 | 837,358 | △1,629 | 231,340 | |
| | 기타이전수입(지원금) | | 17,112 | 0.1 | 8,732 | 8,380 | 96.0 | 0 | 2,354 | 6,026 |
| | 자 체 수 입 | 교수학습활동수입 | 1,196 | 0.1 | 1,464 | △268 | △18.3 | △268 | 0 | 0 |
| 행 정 활 동 수 입 | | 4,347 | 0.1 | 4,718 | △371 | △7.9 | △371 | 0 | 0 | |
| 자 산 수 입 | | 22,143 | 0.1 | 7,519 | 14,624 | 194.5 | 14,624 | 0 | 0 | |
| 이 자 수 입 | | 5,607 | 0.1 | 5,607 | 0 | 0.0 | 0 | 0 | 0 | |
| 기 타 수 입 | | 143,816 | 0.9 | 92,704 | 51,112 | 55.1 | 51,112 | 0 | 0 | |
| 계 | | 177,109 | 1.3 | 112,012 | 65,097 | 58.1 | 65,097 | 0 | 0 | |
| 지 방 채 | | 0 | 0.0 | 0 | 0 | 0.0 | 0 | 0 | 0 | |
| 기 타 | 전 년 도 이 월 금 | 461,269 | 3.0 | 324,342 | 136,927 | 42.2 | 136,927 | 0 | 0 | |
| | 금 융 자 산 회 수 | 10,070 | 0.1 | 9,904 | 166 | 1.7 | 166 | 0 | 0 | |
| | 계 | 471,339 | 3.1 | 334,246 | 137,093 | 41.0 | 137,093 | 0 | 0 | |

3.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추경예산 | | 기정예산 | 증감내역 | | | | | |
|--------------|--------------------|-------------------|------------------|-------------------|------------------|----------------|------------------|----------------|----------------|---------|
| | | 금액 | 비율 | | 증감액 | 비율 | 일반재원 | 목적지정 | | |
| | | | | | | | 추경 | 우선확정 | | |
| 합 계 | | 14,373,020 | 100 | 10,639,264 | 3,733,756 | 35.1 | 3,326,535 | 33,097 | 374,124 | |
| 인건비 | 공무원인건비 | 4,424,899 | 30.8 | 4,427,567 | △2,668 | △0.1 | △2,668 | 0 | 0 | |
| | 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제교직원 | 851,583 | 5.9 | 826,305 | 25,278 | 3.1 | 25,278 | 0 | 0 | |
| | 사립학교인건비 | 1,282,377 | 8.9 | 1,274,507 | 7,870 | 0.6 | 7,870 | 0 | 0 | |
| | 인건비 계 | 6,558,859 | 45.6 | 6,528,379 | 30,480 | 0.5 | 30,480 | 0 | 0 | |
| 경상비 | 교육행정정기관 기관운영비 | 36,417 | 0.3 | 33,000 | 3,417 | 10.4 | 3,417 | 0 | 0 | |
| | 학교 운영 비 | 공립 | 755,716 | 5.3 | 669,720 | 85,996 | 12.8 | 85,996 | 0 | 0 |
| | | 사립 | 229,972 | 1.6 | 209,972 | 20,000 | 9.5 | 20,000 | 0 | 0 |
| | | 소계 | 985,688 | 6.9 | 879,692 | 105,996 | 12.0 | 105,996 | 0 | 0 |
| | 경상비 계 | 1,022,105 | 7.2 | 912,692 | 109,413 | 12.0 | 109,413 | 0 | 0 | |
| 사업비 | 교육사업비 | 2,823,865 | 19.7 | 2,312,866 | 510,999 | 22.1 | 208,558 | 31,852 | 270,589 | |
| | 시설 사업 비 | 학교신증설 | 68,972 | 0.5 | 57,512 | 11,460 | 19.9 | 9,215 | 2,245 | 0 |
| | | 일반시설 | 898,940 | 6.2 | 626,025 | 272,915 | 43.6 | 171,492 | 0 | 101,423 |
| | | 급식시설 | 85,560 | 0.6 | 61,087 | 24,473 | 40.1 | 24,165 | △1,000 | 1,308 |
| | | 소계 | 1,053,472 | 7.3 | 744,624 | 308,848 | 41.5 | 204,872 | 1,245 | 102,731 |
| 사업비 계 | 3,877,337 | 27.0 | 3,057,490 | 819,847 | 26.8 | 413,430 | 33,097 | 373,320 | | |
| 재무 활동 | 지방채상환 등 | 52 | 0.1 | 52 | 0 | 0.0 | 0 | 0 | 0 | |
| | BTL 상환 | 103,981 | 0.6 | 102,393 | 1,588 | 1.6 | 784 | 0 | 804 | |
| | 기금전출금 | 2,747,315 | 19.1 | 28,169 | 2,719,146 | 9,653.0 | 2,719,146 | 0 | 0 | |
| | 소계 | 2,851,348 | 19.8 | 130,614 | 2,720,734 | 2,083.0 | 2,719,930 | 0 | 804 | |
| 예비비 및 기타 | | 63,371 | 0.4 | 10,089 | 53,282 | 528.1 | 53,282 | 0 | 0 | |

I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추경예산안은 2022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9호로 제출되어 2022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¹⁾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²⁾ 따라 기정예산 10조 6,392억 6천 4백만원 대비 35.1%에 해당하는 3조 7,337억 5천 6백만원이 증액된 14조 3,730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 보통교부금 확정·추가 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등의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반영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총괄 검토

-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10조 6,392억 6천 4백만원)보다 3조 7,337억 5천 6백만원(35.1%)이 증액편성된 14조 3,730억 2천만원입니다.

1)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경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42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2) 「지방재정법」

제45조(추경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표 - 1]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

| 추경예산안 (A) | 기정예산 (B) | 증 감 내 역 | | | 증 감 륜 |
|--------------|-------------|-----------|-----------|----------|-------|
| | | 증감액(A-B) | 증 액 | 감 액 | |
| 14,373,020 | 10,639,264 | 3,733,756 | 3,986,201 | △252,445 | 35.1 |

-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4,561억 1천 7백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조 670억 6천 9백만원, 기타이전수입 83억 8천만원, 자체수입 650억 9천 7백만원, 전년도이월금 1,369억 2천 7백만원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3조 7,337억 5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또한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304억 8천만원, 경상비 1,094억 1천 3백만원, 교육사업비 5,109억 9천 9백만원, 시설사업비 3,088억 4천 8백만원, 기금전출금 2조 7,191억 4천 6백만원, BTL상환 15억 8천 8백만원, 반환금 432억 8천 2백만원, 예비비 100억원 등 총 3조 7,337억 5천 6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추경예산의 증액은 1차 추경예산시 기정예산 대비 증액률 (0.5%) 보다 매우 높은 규모로서, 이는 지난 1차 추경예산이 신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대응 예산을 긴급히 편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것과 달리 전년도 결산을 통해 확정된 세입경정에 따른 교부금 등 이전수입의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추경예산의 본예산 대비 연평균 증가율인 13%(1조 1,932억 6천만원) 대비 약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라 하겠습니다.

[표 - 2] 최근 5년간 본예산 대비 추경 증감액과 증감률

(단위 : 백만원)

| 연도 | 추경예산 | 본예산 | 비 교 증 감 | | | 증감비율 |
|------|------------|------------|-----------|----------|-----------|------|
| | | | 일반 재원 | 목적 재원 | 계 | |
| 2021 | 11,583,632 | 9,741,994 | 1,519,177 | 322,461 | 1,841,638 | 18.9 |
| 2020 | 10,556,352 | 10,084,661 | 69,797 | 401,894 | 471,691 | 4.7 |
| 2019 | 11,005,898 | 9,380,315 | 1,393,822 | 231,761 | 1,625,583 | 17.3 |
| 2018 | 9,885,510 | 9,151,267 | 540,378 | 193,865 | 734,243 | 8.0 |
| 2017 | 9,440,868 | 8,147,725 | 1,121,871 | 171,272 | 1,293,143 | 15.9 |

나.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

1) 이전수입

○ 금번 추경예산안의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조 1,243억 4천 5백만원 이 증가한 규모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 이전수입(2조 4,561억 1천 7백만원)과 광역 및 자치구의 법정, 비법정 전입금인 자치단체이전수입(1조 670억 6천 9백만원), 그리고 기타이전 수입(83억 8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가) 중앙정부이전수입(주요사업별 설명자료 5~9pp)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추경예산 | | 기정예산 | 증감내역 | | | | | |
|-----------|-----------|-------|-----------|-----------|-------|-----------|--------|---------|--|
| | 금액 | 비율 | | 증감액 | 비율 | 일반재원 | 목적지정 | | |
| | | | | | | | 추경 | 우선확정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7,918,258 | 92.4 | 5,571,438 | 2,346,820 | 99.3 | 2,286,987 | △945 | 60,778 | |
| 보통교부금 | 7,589,590 | 88.5 | 5,302,603 | 2,286,987 | 43.1 | 2,286,987 | 0 | 0 | |
| 특별교부금 | 166,351 | 1.9 | 106,518 | 59,833 | 56.2 | 0 | △945 | 60,778 | |
| 증액교부금 | 162,317 | 1.9 | 162,317 | 0 | 0.0 | 0 | 0 | 0 | |
| 국고보조금 | 98,659 | 1.2 | 23,328 | 75,331 | 322.9 | 0 | △649 | 75,980 | |
| 특별회계전입금 | 556,340 | 6.5 | 522,374 | 33,966 | 6.5 | 0 | 33,966 | 0 | |
| 계 | 8,573,257 | 100.0 | 6,117,140 | 2,456,117 | 40.2 | 2,286,987 | 32,372 | 136,758 | |

- 먼저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2조 2,869억 8천 7백만원, 특별교부금 598억 3천 3백만원 등 2조 3,468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5조 5,714억 3천 8백만원보다 42.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는 「2022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통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220, 2022.2.25.)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교부 통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099, 2022.4.8.), 그리고 「2022회계연도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알림」(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918, 2022.6.3.)에 따른 교부금이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 이 중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수요 66개 사업(110억 9천 7백만원), 지역교육현안수요 9개 사업(223억 9천 4백만원) 그리고 재해대책수요 5개 사업에(272억 8천 7백만원) 대해 607억 7천 8백만원이 목적지정 재원으로 우선확정 되었으나, 교육부가 전문대 연계형 직업교육 운영 등 7개 사업에서 9억 4천 5백만원을 감액 교부함에 따라 이를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한 것입니다.³⁾

[표 - 3] 특별교부금 감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세부사업 | 사 업 명 | 추경예산 | 기정예산 | 증감액 |
|-----------------|-------------|--------------|-------|-------|-------|
| 특별교부금 (추경편성) | 학 력 평 가 관 리 | 과정중심평가내실화지원 | 75 | 84 | △9 |
| | ICT활용교육지원 |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성화 | 427 | 439 | △12 |
| | 방과후학교운영 | 방과후돌봄성과분석 | 38 | 40 | △2 |
| | 직업교육운영 | 전문대연계형직업교육운영 | 0 | 214 | △214 |
| | 직업교육운영 | 직업계고교육역량강화 | 125 | 172 | △47 |
| | 직업교육환경개선 | 직업교육혁신지구 | 0 | 400 | △400 |
| | 직업교육환경개선 | 산학일체형도제학교운영 | 2,992 | 3,253 | △261 |
| | 소 계(7건) | | | 3,657 | 4,602 |

3) 추경예산 성립 전 우선사용 내역은 [붙임1] 참고.

-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은 753억 3천 1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9개 사업이 목적지정재원으로 759억 8천만원 우선확정되었으나,이 중 ‘교육급여’ 사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급여의 수급 대상자 감소와 그에 따른 반환금 발생으로 인한 사업불용예산 최소화를 이유로 보조금 6억 4천 9백만원을 감액하기로 결정⁴⁾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데 따른 것입니다.

[표 - 4] 국고보조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재 원 | 세 부 사 업 | 사 업 명 | 성립전 우선사용 | 우선 확정일 |
|------------------|----------|------------------|---------------|-----------|
| 국 보 조 금 | 교육과정운영지원 | 발명교실 운영 | 43 | 04-27 |
| | 도서관운영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 42 | 03-03 |
| | |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 4 | 03-10 |
| | | 도서관 창작공간 조성 | 100 | 04-20 |
| | | 웹툰창작 체험관 조성 및 운영 | 20 | 04-21 |
| | 돌봄교실운영 |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 30 | 02-11 |
| | |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 60 | 06-22 |
| | 학교시설환경개선 | 그린스마트스쿨 | 75,681 | 06-20 |
| | 교육급여지원 | 교육급여지원 | △649 | |
| | 소 계 (9건) | | 75,331 | |

-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전입금은 「2022학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1-35호,2121.12.30.)에 따라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액이 변동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39억 6천 6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4) 「2022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사업 예산 감액 계획」(참여협력담당관-8651,2022.7.12.)

[표 - 5] 누리과정(유아학비·보육료) 부담비용 고시 변동 내역

| 연령 | 지원액(1인당, 월) | | | | | |
|-----|-------------|----------|----------|----------|----------|----------|
| | 국공립유치원 | | 사립유치원 | | 어린이집 | |
| | 2021년 | 2022년 | 2021년 | 2022년 | 2021년 | 2022년 |
| 만5세 | 80,000원 | 100,000원 | 260,000원 | 280,000원 | 260,000원 | 280,000원 |
| 만4세 | | | | | | |
| 만3세 | | | | | | |

나) 자치단체이전수입(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0~15pp)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추경예산안(A) | 기정예산(B) | 증감내역 | | 재원구분 | | | 증감유 |
|--------------|-----------|-----------|------------|----------|---------|---------|--------|-------------------|
| | | | 증감액(C=A-B) | 증감률(C/B) | 일반재원 | 목적지정 | | |
| | | | | | | 우선확정 | 추경편성 | |
| 합계 | 5,134,203 | 4,067,134 | 1,067,069 | 26.2 | 837,358 | 231,340 | △1,629 | |
| 법정이전수입 | 4,846,662 | 4,009,737 | 836,925 | 20.9 | 837,358 | 0 | △433 | |
| 지방교육세전입금 | 2,224,857 | 1,966,277 | 258,580 | 13.2 | 258,580 | 0 | 0 | 21년 정산분 |
| 담배소비세전입금 | 281,202 | 257,189 | 24,013 | 9.3 | 24,013 | 0 | 0 | 21년 정산분 |
| 시도세전입금 | 2,211,744 | 1,662,994 | 548,750 | 33.0 | 548,750 | 0 | 0 | 21년 정산분 |
|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 1,995 | 1,995 | 0 | 0.0 | 0 | 0 | 0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 102,610 | 96,595 | 6,015 | 6.2 | 6,015 | 0 | 0 |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 반영 |
| 교육급여보조금 | 9,220 | 9,653 | △433 | △4.5 | 0 | 0 | △433 | 수급자수 감소 |
| 무상교육경비금 | 15,034 | 15,034 | 0 | 0.0 | 0 | 0 | 0 | |
| 비법정이전수입 | 287,541 | 57,397 | 230,144 | 401.0 | 0 | 231,340 | △1,196 | |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 183,468 | 44,605 | 138,863 | 311.3 | 0 | 139,975 | △1,112 | 우선확정분 반영 |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 104,073 | 12,792 | 91,281 | 713.6 | 0 | 91,365 | △84 | 우선확정분 반영 |

○ 금번 추경예산안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369억 2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제2항에5) 따른 시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과

5)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지방세법」 제69조6) 및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7) 따른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 사업 보전분과 국가의 지방이양 사업 보전분 중 시·도교육청 안분액이 반영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비법정전수입은 ‘입학준비금 지원’ 과 ‘학교급식현대화’ 사업이 각각 1억 9천 6백만원, 1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물가 인상에 따른 식재료비 인상 및 추가지원 등에 따라 ‘무상급식’ 비용의 증가 등의 사유로 2,301억 4천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표 - 5] 비법정전입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부서 | 사업명 | 예산액 |
|---------|------------------|-------|
| 참여협력담당관 | 마을결합중점학교 | 125 |
| 참여협력담당관 | 예체능디지털협력강사및멘토링지원 | 1,000 |
| 참여협력담당관 | 입학준비금지원 | △112 |
| 유아교육과 | 유치원꿈을담은놀이교실 | 2,000 |

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경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본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 6)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분의 15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 7) [별표3]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나목관련) - 서울특별시 36,228(백만원)
 [별표5]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나목관련) - 서울특별시 8,887(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사업부서 | 사업명 | 예산액 |
|----------------------|------------------------|----------------|
| 체육건강문화예술과 | 무상급식(서울시전입금) | 132,193 |
| 체육건강문화예술과 | 학교급식현대화 | △1,000 |
| 교육시설안전과 | 특별교육경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 4,656 |
| 광역자치단체전입금(소계) | | 138,863 |
| 참여협력담당관 | 입학준비금지원 | △84 |
| 중등교육과 | 영어원어민인건비및제경비 | 1,470 |
| 평생교육과 | 한도서관한책읽기 | 8 |
| 평생교육과 |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 16 |
| 체육건강문화예술과 | 무상급식 | 89,043 |
| 교육시설안전과 | BTL원금,이자 | 804 |
| 과학전시관 | 마을생태체험과학교실 | 25 |
| 기초자치단체전입금(소계) | | 91,282 |
| 합 계(14건) | | 230,144 |

다) 기타이전수입(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6~19pp)

- 금번 추경예산안의 기타이전수입 중 민간이전수입은 「2022년 국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을 위한 KB금융그룹 기부금 지원금 확정 안내」에(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6715, 2021.12.31.) 따른 병설유치원 신·증설 시설비 22억 4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그리고 AI교육 선도학교 운영 지원사업(16억 3천 7백만원)⁸⁾과 검정고시 프로그램운영 지원 사업(2백만원)⁹⁾을 위한 기타지원금 16억 3천 9백만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 '2022 AI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사업 협약 체결 결과 안내', 한국과학창의재단 SW·AI인재양성팀 -1109,(2022.4.11.)

9) '2022년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검정고시-협동조합지원센터-357,(2022.3.14.)

- 또한 기타이전수입 중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노동인권교육 수립모델 개발·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유아교육 실태조사 및 현장자료 개발’, ‘서울교육연수원 미래인재양성과정’ 실시에 따른 시·도교육청 분담금 44억 9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 자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3~39pp)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추 경 예 산 안 (A) | 기 정 예 산 (B) | 증 감 내 역 | |
|-------------|------------------|----------------|---------------|--------|
| | | | 증 감 액 (A - B) | 증 감 률 |
| 합 계 | 177,109 | 112,012 | 65,097 | 58.1% |
| 교수학습활동수입 | 1,196 | 1,464 | △268 | △18.3% |
| 행 정 활 동 수 입 | 4,347 | 4,718 | △371 | △7.9% |
| 자 산 수 입 | 22,143 | 7,520 | 14,624 | 194.5% |
| 이 자 수 입 | 5,607 | 5,607 | 0 | 0.0% |
| 기 타 수 입 | 143,816 | 92,704 | 51,112 | 55.1% |

- 금번 추경예산안의 자체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등 시설의 휴관과 교육프로그램 참여생 감소 등으로 인해 교수학습활동수입과 행정활동수입이 총 6억 3천 9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체수입 중 자산수입은 도곡중 일부 토지매각 대금의 증가로 인해 146억 2천 4백만원 증액되었고, 기타수입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학교회계반납금 등의 증가로 511억 1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의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50억 9천 7백만원(58.1%) 증가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일시적 세입 증대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입 증대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의 자체수입

비율은 1.3%에 불과한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세입여건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2021년도) 결산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338억 6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¹⁰⁾ 따라 다음연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결산 전 당해 연도에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¹¹⁾

[표-6] 최근5년간 본예산 대비 추경안의 순세계잉여금 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본예산(A) | 311,863 | 506,772 | 671,796 | 523,349 | 280,604 | 324,342 |
| 추경예산(B) | 505,441 | 515,188 | 769,861 | 381,143 | 326,309 | 458,208 |
| 추경증감(B-A) | 193,578 | 8,416 | 98,065 | △142,206 | 45,705 | 133,866 |

10)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11)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여기서 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세계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 |
|------------------------------------------------|
| ◇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
|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 |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교육청은 연평균 4,999억 5천 8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바, 금번 추경예산의 순세계잉여금(4,582억 8백만원)은 총액 규모면에서 지난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규모라 할 것입니다.
- 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대비 1,338억 6천 6백만원으로 이는 5년 평균 증감액(407억 1천 2백만원) 대비 약 3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예측 규모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안이하게 편성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이 임의적으로 과소 또는 과대 편성되지 않도록 잉여금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1) 세출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 구 | 분 | 추 경 예 산 안 | | 기 정 예 산 | | 증 감 내 역 | | 재 원 구 분 | | | |
|---|-----------|------------|-------|------------|-------|------------------------|--------------------|-----------|---------|---------|---------|
| | | 금 액 (A) | 구 성 비 | 금 액 (B) | 구 성 비 | 증 감 액 (C = A - B) | 증 감 륜 (C / B) | 일 재 | 반 원 | 목 적 지 정 | |
| | | | | | | | | | | 우 선 확 정 | 추 경 편 성 |
| 합 | 계 | 14,373,020 | 100.0 | 10,639,264 | 100.0 | 3,733,756 | 35.1 | 3,326,535 | 374,124 | 33,097 | |
| 인 | 건 비 | 6,558,859 | 45.6 | 6,528,379 | 61.4 | 30,480 | 0.5 | 30,480 | 0 | 0 | |
| 경 | 상 비 | | | | | | | | | | |
| | 계 | 1,022,105 | 7.2 | 912,692 | 8.6 | 109,413 | 12.0 | 109,413 | 0 | 0 | |
| | 기관운영비 | 36,417 | 0.3 | 33,000 | 0.3 | 3,417 | 10.4 | 3,417 | 0 | 0 | |
| | 학교운영비 | 985,688 | 6.9 | 879,692 | 8.3 | 105,996 | 12.0 | 105,996 | 0 | 0 | |
| 사 | 업 비 | | | | | | | | | | |
| | 계 | 3,877,337 | 27.0 | 3,057,490 | 28.7 | 819,847 | 26.8 | 413,430 | 373,320 | 33,097 | |
| | 교육사업비 | 2,823,865 | 19.7 | 2,312,866 | 21.7 | 510,999 | 22.1 | 208,558 | 270,589 | 31,852 | |
| | 시설사업비 | 1,053,472 | 7.3 | 744,624 | 7.0 | 308,848 | 41.5 | 204,872 | 102,731 | 1,245 | |
| 재 | 무 | | | | | | | | | | |
| | 활 | | | | | | | | | | |
| | 동 | | | | | | | | | | |
| | 계 | 2,851,348 | 19.8 | 130,614 | 1.2 | 2,720,734 | 2,083.0 | 2,719,930 | 804 | 0 | |
| | 지방채상환 | 52 | 0.1 | 52 | 0.0 | 0 | 0.0 | 0 | 0 | 0 | |
| | BTL 상환 | 103,981 | 0.6 | 102,393 | 1.0 | 1,588 | 1.6 | 784 | 804 | 0 | |
| | 기금전출금 | 2,747,315 | 19.1 | 28,169 | 0.3 | 2,719,146 | 9,653.0 | 2,719,146 | 0 | 0 | |
| 예 | 비 비 및 기 타 | 63,371 | 0.4 | 10,089 | 0.1 | 53,282 | 528.1 | 53,282 | 0 | 0 | |

○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조 7,337억 5천 6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이 중 사업별 우선확정 사용분 3,741억 2천 4백만원과 추경예산성립 후 집행할 목적지정지원금 330억 9천 7백만원, 그리고 기금전출금 2조 7,191억 4천 6백만원과 BTL상환 7억 8천 4백만원, 예비비 및 반환금 532억 8천 2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사업별 가용재원은 세출 총 증가액의 14.8%인 5,533억 2천 3백만원에 불과합니다.

- 이러한 가용재원의 세출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가 26억 6천 8백만원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원¹²⁾과 계약제교직원 인건비가 252억 7천 8백만원, 사립학교 인건비가 78억 7천만원 각각 증가하는 등 총 304억 8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 또한 경상비는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가 각각 34억 1천 7백만원 및 1,059억 9천 6백만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재원 사업비의 경우 교육사업비가 2,085억 5천 8백만원, 시설사업비가 2,048억 7천 2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 특히 교육사업비의 경우 2,085억 5천 8백만원 중 ‘디지털 교실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칠판 보급(물품관리)’ 524억 4천만원, ‘학교도서실 환경개선’ 387억 5천만원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학교방역인력 지원을 위한 ‘학교감염병 관리’ 325억 7천 1백만원, ‘무상급식’ 246억 5천 4백만원 등에 교육사업비의 71.2%인 1,484억 1천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 인건비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추경예산 | 기정예산 | 증감내역 | |
|-----|-----------------|-----------|-----------|--------|------|
| | | | | 증감액 | 비율 |
| 인건비 | 공무원인건비 | 4,424,899 | 4,427,567 | △2,668 | △0.1 |
| | 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제교직원 | 851,583 | 826,305 | 25,278 | 3.1 |
| | 사립학교인건비 | 1,282,377 | 1,274,507 | 7,870 | 0.6 |
| | 소계 | 6,558,859 | 6,528,379 | 30,480 | 0.5 |

- 금번 추경예산안의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304억 8천만원이 증액 편

12) 2021년 집단임금협약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붙임2] 참고.

성되었는바, 공무원 인건비는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의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 감소와 맞춤형복지비 소요예산의 정정에 따른 감액으로 26억 6천 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반면, 근로자 인건비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교육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방식(직종별 단가교부에서 실소요액 지원방식)의 변경에 따라 인건비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제 교원 증가와 장애인근로자 고용 증가에 따른 보수 및 맞춤형 복지비 등 인건비 증가에 따라 252억 7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또한 사립학교인건비는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상여금에 대한 집행 잔액 20억원을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계약제교원의 임용상한을 만 62세에서 65세로 상향함에 따라 인건비가 78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의 인건비는 고용확대와 인건비 인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액편성되었으나, 공무원 인건비 중 맞춤형 복지비의 경우 당초 소요예산 산정시 추계의 중복에 따른 재산정으로 19억 3천 9백만원의 예산이 감조정되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타 비목에 비해 변동 가능성이 높아 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예산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객관적·구체적으로 추계되고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안 제출시 소요예산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중복편성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경상비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추경예산 | 기정예산 | 증감내역 | | |
|-----|-----------|-----------|---------|---------|---------|------|
| | | | | 증감액 | 비율 | |
| 경상비 | 교육행정기관운영비 | 36,417 | 33,000 | 3,417 | 10.4 | |
| | 학교운영비 | 공 립 | 755,716 | 669,720 | 85,996 | 12.8 |
| | | 사 립 | 229,972 | 209,972 | 20,000 | 9.5 |
| | | 소 계 | 985,688 | 879,692 | 105,996 | 12.0 |
| | 소계 | 1,022,105 | 912,692 | 109,413 | 12.0 | |

- 금번 추경예산안의 ‘경상비’는 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교육지원청 등 소속 기관운영비(34억 1천 7백만원)와 학교운영비 중 학교자율회복지원비(1,059억 9천 6백만원-공립 859억 9천 6백만원, 사립 200억원) 등 1,094억 1천 3백만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상비의 증액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에 따른 운영비 추가 지원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¹³⁾ 시행(2022.1.27.)에 따른 기관별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비용 등의 지원과 자율회복연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운영비와 학교기본운영비(사립은 운영비재정결함보조)¹⁴⁾ 중 공통경상운영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데 따른 것입니다.

13)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4)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상운영비 및 통합교부사업비(개별경상운영비 등)로 구성됨
학교기본운영비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4) 사업비

가) 교육사업비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추경 예산 | | 기정예산 | 증감 내역 | | | | |
|-----------------|-----------|------|-----------|---------|------|---------|--------|---------|
| | 금액 | 비율 | | 증감액 | 비율 | 일반재원 | 목적지정 | |
| | | | | | | | 추경 | 우선확정 |
| 합 계 | 2,823,865 | 100 | 2,312,866 | 510,999 | 22.1 | 208,558 | 31,852 | 270,589 |
| 인 적 자 원 운 용 | 64,772 | 2.3 | 62,948 | 1,824 | 2.9 | 886 | 109 | 829 |
| 교 수 학 습 활 동 지 원 | 674,540 | 23.9 | 591,293 | 83,247 | 14.1 | 66,333 | △943 | 17,857 |
| 교 육 복 지 | 840,473 | 29.8 | 804,430 | 36,043 | 4.5 | 1,704 | 32,686 | 1,653 |
| 보 건 급 식 | 995,081 | 35.2 | 668,845 | 326,236 | 48.8 | 80,749 | 0 | 245,487 |
| 평 생 교 육 | 39,338 | 1.4 | 33,373 | 5,965 | 17.9 | 1,850 | 0 | 4,115 |
| 교 육 행 정 일 반 | 209,661 | 7.4 | 151,977 | 57,684 | 38.0 | 57,036 | 0 | 648 |

- 금번 추경예산안의 교육사업비는 일반재원과 목적지정재원을 모두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5,109억 9천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우선 인적자원운용 사업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8억 2천 4백만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교원(계약제교원) 증가로 인한 교원연구비와 사망조위금 등 교직원복지지원이 9억 3천 2백만원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832억 4천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학교도서관 환경개선(342억 5천만원) 및 자동화기기 구축(45억)과 창의융합과학실험실 개선(54억 9천 5백만원), 꿈을 담은 놀이터 추가 지원(25교, 57억 9천 6백만원) 등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 교육복지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60억 4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전면등교 시행에 따른 긴급돌봄운영비 등 사업예산이 58억 9천 4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액 변동(1인당 월 2만원 인상)에 따른 사업 예산의 증액(345억 4천 1백만원)과 방과후 학교 운영 정상화에 따른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및 지원액 확대(기본 60만원+추가 20만원)에 따라 예산(32억 5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표-7] 교육복지사업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

| 세부사업 | 추경예산 (A) | 기정예산 (B) | 증감내역 | | | | |
|-----------------------|-------------|-------------|--------------|--------|--------|-------|--------|
| | | | 증감액 (A-B) | 비율 | 일반재원 | 목적지정 | |
| | | | | | | 우선확정 | 추경편성 |
| 합 계 | 840,473 | 804,430 | 36,043 | 4.5% | 1,704 | 1,653 | 32,686 |
| 교육비지원 | 65,638 | 63,707 | 1,931 | 3.0% | 2,127 | 0 | △196 |
| 교육급여지원 | 31,626 | 32,740 | △1,114 | △3.4% | △32 | 0 | △1,082 |
| 방과후학교운영 | 13,166 | 12,559 | 607 | 4.8% | 609 | 0 | △2 |
|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 16,556 | 13,303 | 3,253 | 24.5% | 3,253 | 0 | 0 |
| 돌봄교실운영 | 29,017 | 34,821 | △5,804 | △16.7% | △5,893 | 90 | 0 |
| 교육복지우선지원 | 42,721 | 41,237 | 1,484 | 3.6% | 153 | 1,331 | 0 |
| 급식비지원 | 9,543 | 8,976 | 567 | 6.3% | 567 | 0 | 0 |
| 정보화지원 | 3,953 | 3,953 | 0 | 0.0% | 0 | 0 | 0 |
| 누리과정지원 | 560,352 | 525,812 | 34,540 | 6.6% | 575 | 0 | 33,966 |
| 교과서지원 | 60,233 | 59,671 | 562 | 0.9% | 561 | 0 | 0 |
|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 자녀교육지원 | 7,668 | 7,653 | 15 | 0.2% | △217 | 232 | 0 |

○ 보건급식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262억 3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물가 변동에 따른 식재료비 인상과 급식방역 인건비 등으로 인해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운영비의 증가(2,469억 1천 9백만원) 및 방역과 보건실 현대화 사업 등을 위한 학교보건관리 사업비가 증가(603억 2천 3백만원)하였기 때문입니다.

[표-8] 보건급식사업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

| 세부사업 | 추경예산 (A) | 기정예산 (B) | 증감내역 | | | | |
|----------|-------------|-------------|--------------|-------|--------|---------|------|
| | | | 증감액 (A-B) | 비율 | 일반재원 | 목적지정 | |
| | | | | | | 우선확정 | 추경편성 |
| 합 계 | 995,081 | 668,845 | 326,236 | 48.8% | 80,748 | 245,488 | 0 |
| 학교보건관리 | 170,600 | 110,277 | 60,323 | 54.7% | 36,271 | 24,051 | 0 |
| 학교환경위생관리 | 67,195 | 48,200 | 18,994 | 39.4% | 18,994 | 0 | 0 |
| 산업안전보건관리 | 446 | 446 | 0 | 0.0% | 0 | 0 | 0 |
| 학교급식운영 | 756,841 | 509,922 | 246,919 | 48.4% | 25,483 | 221,436 | 0 |

○ 평생교육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6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평생교육시설지원을 위한 우선확정 예산(41억 1천 5백만원)을 제외
 한 일반 재원에서 노후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공간개선 사업을 위한 도서
 관 운영사업비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등 18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
 었기 때문입니다.

[표-9] 평생교육사업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

| 세부사업 | 추경예산 (A) | 기정예산 (B) | 증감내역 | | | | |
|-----------|-------------|-------------|--------------|-------|--------------|-------|------|
| | | | 증감액 (A-B) | 비율 | 일반재원 | 목적지정 | |
| | | | | | | 우선확정 | 추경편성 |
| 합 계 | 39,338 | 33,373 | 5,965 | 17.9% | 1,850 | 4,115 | 0 |
| 평생교육시설및운영 | 21,084 | 16,517 | 4,567 | 27.7% | 643 | 3,924 | 0 |
| 평생학습운영 | 6,570 | 6,552 | 18 | 0.3% | 0 107(천원) | 18 | 0 |
| 방송통신중고운영 | 1,224 | 1,224 | 0 | 0.0% | 0 | 0 | 0 |
| 검정고시운영 | 1,061 | 1,061 | 0 | 0.0% | 0 | 0 | 0 |
| 도서관운영 | 9,399 | 8,029 | 1,380 | 17.2% | 1,206 | 173 | |

○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76억 8천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전자칠판 설치 학교 수를 확대(중2, 고1)하기 위해 524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시설사업비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추경 예산 | | 기정예산 | 증감 내역 | | | | | |
|-----------------------|------------------|--------------------------|---------|---------|---------|---------|---------|---------|---------|---------|
| | | 금액 | 비율 | | 증감액 | 비율 | 재원별 | | | |
| | | | | | | | 일반재원 | 목적재원 | | |
| | | | | | | | | 추경 | 우선확정 | |
| 합 계 | | 1,053,472 | 100 | 744,624 | 308,848 | 41.5 | 204,872 | 1,245 | 102,731 | |
| 학 신 증 교 설 | 학 교 신 설 | 40,824 | 3.9 | 34,923 | 5,901 | 16.9 | 3,816 | 2,085 | 0 | |
| | 교 실 증 축 | 28,148 | 2.7 | 22,589 | 5,559 | 24.6 | 5,399 | 160 | 0 | |
| | 소 계 | 68,972 | 6.6 | 57,512 | 11,460 | 19.9 | 9,215 | 2,245 | 0 | |
| 시 설 | 일 반 시 설 | 학 교 시 설 개 개 설 축 | 38,502 | 3.6 | 34,780 | 3,722 | 10.7 | 3,722 | 0 | 0 |
| | | 학 교 시 설 교 육 환 경 개 선 | 825,632 | 78.4 | 576,942 | 248,690 | 143.3 | 147,267 | 0 | 101,423 |
| | | 교 육 행 정 기 관 | 34,806 | 3.3 | 14,303 | 20,503 | 43.1 | 20,503 | 0 | 0 |
| | | 소 계 | 898,940 | 85.3 | 626,025 | 272,915 | 43.6 | 171,492 | 0 | 101,423 |
| 개 선 시 설 | 급 식 시 설 | 신 구 학 교 조 리 기 구 교 입 | 7,577 | 0.7 | 6,414 | 1,163 | 18.1 | 1,163 | 0 | 0 |
| | | 노 후 조 리 기 구 교 체 및 확 충 | 39,464 | 3.8 | 22,926 | 16,538 | 72.1 | 17,538 | △1,000 | 0 |
| | | 급 식 시 설 보 수 | 10,921 | 1.0 | 11,482 | △561 | △4.9 | △1,060 | 0 | 499 |
| | | 급 식 시 설 신 증 설 축 | 27,598 | 2.6 | 20,265 | 7,333 | 36.2 | 6,524 | 0 | 809 |
| | | 소 계 | 85,560 | 8.1 | 61,087 | 24,473 | 40.1 | 24,165 | △1,000 | 1,308 |
| 계 | | 984,500 | 93.4 | 687,112 | 297,388 | 43.3 | 195,657 | △1,000 | 102,731 | |

○ 금번 추경예산안의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3,088억 4천 8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바, 학교 신·증설과 노후시설 및 위험시설 개선 등을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와 노후 조리기구 교체 등의 급식시설 개

선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특히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는 기정예산 대비 2,486억 9천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당초 일반재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중 둔촌초, 위례초 등 2개 학교의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276억 3천 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공·사립 26개교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756억 8천 1백만원)됨에 따라 전체사업비가 증액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5) 재무활동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추경예산 | | 기정예산 | 증감내역 | | | | | |
|----------|-----------|------------------|-------------|----------------|------------------|----------------|------------------|----------|------------|
| | 금액 | 비율 | | 증감액 | 비율 | 일반재원 | 목적지정 | | |
| | | | | | | | 추경 | 우선확정 | |
| 재무 활동 | 지방채상환 등 | 52 | 0.1 | 52 | 0 | 0.0 | 0 | 0 | 0 |
| | BTL 상환 | 103,981 | 0.6 | 102,393 | 1,588 | 1.6 | 784 | 0 | 804 |
| | 기금전출금 | 2,747,315 | 19.1 | 28,169 | 2,719,146 | 9,653.0 | 2,719,146 | 0 | 0 |
| | 소계 | 2,851,348 | 19.8 | 130,614 | 2,720,734 | 2,083.0 | 2,719,930 | 0 | 804 |
| 예비비 및 기타 | 63,371 | 0.4 | 10,089 | 53,282 | 528.1 | 53,282 | 0 | 0 | |

- 금번 추경예산안의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대비 2조 7,207억 3천 4백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9,620억원)과 그린스마트스쿨 추진(2,210억원) 및 유해·위험 교육시설환경개선(1조 5,213억원)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1조 7,423억원),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148억 4천 6백만원)이 각 기금으로 전출됨에 따른 것입니다.
- 이처럼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체 예산안 규모에서 기금전출금이 72.8%(2조 7,191억 4천 6백만원)에 이르는 등 이례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서 예산제도가 갖는 경직성을 탈피하는데 의의가 있다 것입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금이 예외적인 형태의 재정운용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경예산 중 72.8%인 2조 7,191억 4천 6백만원을 기금으로 전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모의 기금전출의 타당성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컨대 동 추경예산안의 기금전출금 중 64%(1조 7,423억원)를 차지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시설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 보기에 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금의 지출계획상 모든 예산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금년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금을 통해 추진하려고 하는 시설사업은 사업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우선적이라 할 것입니다.

[표-10]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단위 : 천원)

| 수입 계획 | | | | 지출 계획 | | | |
|-------------|----------|-------------|-----------|-------------|--------------------|-------|------------|
| 합계 | 교특회계 전입금 | 예치금 회수 | 이자 수입 | 합계 | 비용자성 사업비 | 기본경비 | 예치금 |
| 320,767,241 | - | 318,411,000 | 2,356,241 | 320,767,241 | 231,702,000 | 2,400 | 89,062,841 |

- 더욱이 기금 운용은 의회의 엄격한 심의를 받는 예산과 달리 기금의 범위에서 의회의 심의 없이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출금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의 지출이 가능함에 따라 예산에 비해 교육감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결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 한편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의 경우 기금의 적립범위와 기금의 사용범위가 법과 조례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현행 조례상 지출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수·학습지원 및 에듀테크 기반 구축과 디지털 행정혁신 및 학교 정보화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동 기금은 운용계획안의 목적대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고, 조례의 개정이 없이는 사실상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바, 이와 같은 막대한 재원의 기금 적립은 시급한 정책사업 추진 및 시설환경개선을 포기하는 등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할 것입니다.
- 또한 현재 동 기금에 대한 전출규모는 9,620억원으로서 최근 3년간 타 시도 교육청 예산 평균(4조 6,154억 4천 1백만원) 대비 기금 평균 적립률 4.8%의 1.8배인 8.5%에 달하며¹⁵⁾, 기금의 규모 역시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 할 것입니다.

[표-11] 타시도 기금 적립 현황¹⁶⁾

(단위 : 백만원)

| 지역구분 | 최근3년 예산 평균 | 기금적립액 | 적립률 |
|------|------------|---------|------|
| 서울 | 11,259,476 | 962,000 | 8.5% |
| 부산 | 4,916,779 | 306,804 | 6.2% |
| 대구 | 3,744,472 | 85,757 | 2.3% |

15) 교육부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와 관련하여, 세출결산액의 5~10%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2020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기금운용 성과분석 검토 결과', 교육부 교육재정과-21847, 7쪽 참조

16)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자료 참고(<https://eduinfo.go.kr/portal/main.do>)

| | | | |
|--------------|------------|---------|-------|
| 인천 | 4,450,737 | 356,605 | 8.0% |
| 광주 | 2,482,370 | 46,135 | 1.9% |
| 대전 | 2,399,734 | 91,452 | 3.8% |
| 울산 | 1,934,230 | 38,376 | 2.0% |
| 세종 | 1,079,677 | 186,541 | 17.3% |
| 경기 | 18,219,995 | 169,958 | 0.9% |
| 강원 | 3,413,630 | 523,710 | 15.3% |
| 충북 | 3,059,056 | 263,296 | 8.6% |
| 충남 | 4,001,077 | 208,592 | 5.2% |
| 전북 | 3,835,631 | 189,435 | 4.9% |
| 경북 | 5,090,019 | 211,118 | 4.1% |
| 경남 | 5,988,767 | 421,047 | 7.0% |
| 평균 (서울제외) | 4,615,441 | 221,345 | 4.8% |

-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기금전출금은 사업추진의 긴급성, 규모의 합리성, 사용 목적의 불명확성, 운용 제한 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기금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실·국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

1) 기획조정실

가) 교육정책개발운영- 정책·안전담당관

(단위 : 천원)

| 구분 | 2022년도 | | | 2021년도 |
|-----------------|-----------|-----------|-------------|-----------|
| | 기정예산 (A) | 추경 증감 (B) | 추경 예산 (A+B) | 최종예산 |
| 계 | 1,019,870 | 49,000 | 1,068,870 | 1,397,760 |
| 민간전문가 및 특별보좌관운영 | 20,150 | - | 20,150 | 27,800 |
| 서울교육아이디어 기획단운영 | 32,700 | - | 32,700 | 38,000 |
| 서울미래교육 전략토론회 | 59,500 | 49,000 | 108,500 | 77,600 |
| 정책연구운영 | 907,520 | - | 907,520 | 1,254,360 |

- ‘교육정책개발운영’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 다양한 교육주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을 개발·연구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중 ‘서울미래교육 전략토론회’는 정책 전반의 보완과 발전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사업입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학생, 학부모,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 토론회 4회, 온라인 토론회 2회 등 총 6회의 토론회를 추가 진행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4천 9백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당초 동 사업은 혁신미래교육정책학술대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였으나 정책사업 정비17) 결과 사업방식을 소규모 토론회로 변경하고 예산 역시

17) ‘2021년 정책·사업 정비 결과 알림’,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7830, 2021.8.17.

| 정비결과 | | |
|------|------|------|
| 정비 | 정비유형 | 정비의견 |
| | | |

2021년도 사업비(본예산 8천 7백만원) 대비 31.3%(2천 7백만원) 감액하여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금년부터 해당 사업 추진을 실무 위주의 소규모 토론회 중심으로 축소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정 예산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스스로 감액 편성하였던 사업예산을 1.8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더욱이 현재(2022년 6월 30일 기준)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률은 39.5%에 불과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아직 사업 확대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 또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은 기정예산의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긴급한 사업소요의 필요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추진하는 추정 예산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업 확대는 예산의 불용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정보화기획-행정관리담당관

(단위 : 천원)

| 구분 | 2022년도 | | | 2021년도 |
|----------|----------|-----------|-------------|--------|
| 사업명 | 기정예산 (A) | 추경 증감 (B) | 추경 예산 (A+B) | 최종예산 |
| 원격업무환경구축 | 61,500 | 2,103,200 | 2,164,700 | 54,000 |

| 유형 | 설명 |
|----|--------------------------------------------------------------------------------------------------------------------------------------------------------------------------------------------------------------------------------------------------------------------------------------------------------------------------------|
| 축소 | <p>사업방식 변경 및 예산축소</p> <p>○ 정책의 평가, 점검, 의견수렴을 위한 전략토론회라는 점에서 교육정보원의 학술대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사업부서 의견을 수용함. 사업부서에서 동 사업을 취지에 맞게 "서울미래전략토론회"로 명칭을 변경, 운영하고자 하므로 정책의 고도화를 위하여 교육연구정보원과 별도로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별도로 학술포럼, 학술대회 등은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 사업내 토론 성격 사업(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등 8회 예정)은 유지하되, 학술대회(2회 예정)는 축소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p> |

-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정보화기획’ 사업은 기존 교육청 자체 센메신저 시스템의 노후화를 개선하여 새로운 시스템 및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3백만원의 예산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미래 서울교육 중기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행정 혁신 및 학교 정보화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추진과제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 및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sen메신저)는 2010년에 도입한 후 매년 일정범위의 보수·유지를 거쳐 사용하고 있으나, 기능 노후 및 서버 기술지원 종료(2023년)로 시스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클라우드 협업시스템 구축·운영’은 우선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여 의견 수렴을 거치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사업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은 추경예산 확정 후 TF구성 및 운영과 나라장터를(G2b) 통해 조달계약을 추진하더라도 최소 3~4개월 정도가 소요됨을 고려한다면 필연적으로 사업비가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바,

사업의 연내집행가능성, 시급성 등의 관점에서 추경예산안의 편성 요건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TF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외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은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교육정책국

가) 초,중학교교과용도서 - 교육혁신과(사업별 설명자료 248쪽)

(단위: 천원)

| 구분 | 2022년도 | | | 2021년도 |
|----------------------|------------|-----------|-------------|------------|
| | 기정예산 (A) | 추경 증감 (B) | 추경 예산 (A+B) | 최종예산 |
| 계 | 58,932,760 | 561,325 | 59,494,085 | 47,870,716 |
| 관외출장여비 | 2,400 | - | 2,400 | 2,400 |
| 업무관계자협의회 | 2,080 | - | 2,080 | 2,080 |
| 인정도서관리 | 3,200 | 11,325 | 14,525 | 3,200 |
| 중학교교과용도서 | 16,717,759 | - | 16,717,759 | 17,614,900 |
| 초·중학교교과용도서 재고위탁관리 | - | 550,000 | 550,000 | - |
| 초등학교교과용도서 | 42,207,321 | - | 42,207,321 | 30,248,136 |

- “초,중학교교과용도서” 사업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게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공급하고 현행 교육과정에 적합한 인정 도서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온라인 학습을 위한 교과서 파일 제공에 따른 추가 저작물 이용을 위한 보상금 지원과 초중학교의 교과용도서 재고의 위탁관리를 위해 5억 6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 중 ‘초·중학교교과용도서재고위탁관리’는 기존에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교과용도서 재고를 위탁업체가 통합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교과서 관리에 대한 담당자의 업무 경감과 교과용도서 예산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5억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 그러나 위탁계획(안)¹⁸⁾ 상의 예산 산출 내역이 업체 1곳의 견적을 기준으로 산출되었고, 재고 교과서 회수 및 전입생 발생 시 교과서 발송 비용

18) 「초·중학교교과용도서재고 위탁 관리(안)」(교육혁신과-10160, 2022.7.14.)

(물류 단가)¹⁹⁾, 전체 위탁비 중 4억 3천 8백만 원을 차지하는 창고 임대료를 포함한 보관·운영비용은 위탁업체 규모나 위치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 예산이 사업 운영에 있어 적절한 수준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 더욱이 배송 시 파손 문제나 교재를 즉시 수령 받지 못하고 배송을 기다려야 하는 전입생의 불편, 사업비의 상당 부분(전산시스템 운영, 교과서 회수 비용 등)은 고정 비용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할 경우 예산 절감 효과가 더욱 불투명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운영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표-12] 초중학교교과용도서재고 위탁관리 예상 내역²⁰⁾

| 구분 | 내역 | 소요예산액(단위 : 원) |
|-----|---------------------------------|--------------------------------|
| 위탁비 | 보관·운영비용(창고임대료, 작업비용, 자재·시설비용 등) | 438,383,040원×1식 = 438,383,040원 |
| | 배송비용(택배비용 등) | 3,500원×2,833명×6월 = 59,493,000원 |
| | 교과서 회수 택배 비용 | 2,910원×933교 = 2,889,630원 |
| | 기타(전산시스템 등) | 49,234,330원×1식 = 49,234,330원 |

- 또한, 유가 상승으로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교과용도서 배송 비용과 회수 비용의 인상에 따른 위탁관리 비용의 증가 가능성도 있어 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청은 추경예산을 통해 동 사업을 시급히 추진하기보다 ① 기존 재고 관리 방식과 ② 교육지원청에서 재고용 도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 ③ 서울시교육청 전체 학교의 재고용 도서를 1곳에서 위탁 관리하는 방식 등 여러 방안을 비교하여 최적안을 먼저 도출한 후 예산

19) 계획(안) 상의 산출 기초에 따르면, 학교별로 남은 재고 교과서 회수를 위한 택배 비용을 학교당 2,910원, 전입생 발생 시 택배 발송 비용을 1건 당 3,500원임

20) 위와 같음

편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추가적으로 동 사업은 위탁관리 시기가 2023년이므로 사업 시행이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보다 차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사업 계획 시 착수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 시점을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 영재교육원운영 - 교육혁신과(사업별 설명자료 278쪽)

(단위: 천원)

| 구분 | 2022년도 | | | 2021년도 |
|--------------------------|-----------|-----------|-------------|-----------|
| | 기정예산 (A) | 추경 증감 (B) | 추경 예산 (A+B) | 최종예산 |
| 계 | 3,105,030 | 440,000 | 3,545,030 | 3,193,530 |
| 과학전시관영재교육원운영 | 422,430 | - | 422,430 | 422,830 |
| 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운영 | 215,600 | - | 215,600 | 227,700 |
| 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운영 (중등협력학교) | 715,000 | 220,000 | 935,000 | 742,000 |
| 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운영 (초등협력학교) | 1,225,000 | 220,000 | 1,445,000 | 1,278,000 |
| 단위학교영재교육원운영 | 527,000 | - | 527,000 | 523,000 |

- “영재교육원 운영” 사업은 창의·융합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본예산 31억 5백만원 대비 4억 4천만원이 증액된 35억 4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 중 ‘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운영(중등협력학교)’와 ‘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운영(초등협력학교)’은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을 위해 공간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협력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영재교육원 협력학교의 노후한 시설이나 기자재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각각 2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 내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협력학교는 초등학교 69개교, 중학교 43개교에 달하고 있음에도²¹⁾ 1개 지원청 당 편성된 예산이 지원청별 협력학교 수에 대한 고려 없이 2천만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교육지원청별로 평균 초등학교 6.27개교와 중학교 3.9개교가 협력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원청별로 협력학교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큰 바, 지원청마다 일괄적으로 2천만원의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13] 교육지원청별 영재교육원 협력학교 현황²²⁾

(단위: 천원)

| 구분 | 동부 | 서부 | 남부 | 북부 | 중부 | 강동 송파 | 강서 양천 | 강남 서초 | 동작 관악 | 성동 광진 | 성북 강북 | 계 | 평균 |
|------|----|----|----|----|----|----------|----------|----------|----------|----------|----------|-----|-------|
| 초등학교 | 5 | 5 | 5 | 6 | 5 | 10 | 6 | 6 | 5 | 7 | 9 | 69 | 6.27 |
| 중학교 | 4 | 3 | 3 | 4 | 2 | 8 | 5 | 5 | 4 | 2 | 3 | 43 | 3.90 |
| 계 | 9 | 8 | 8 | 10 | 7 | 18 | 11 | 11 | 9 | 9 | 12 | 112 | 10.18 |

- 더욱이 사업계획서에²³⁾ 따르면 동 예산은 지원청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교실 리모델링부터 전자철판 설치, 무선 인프라 구축, 책걸상이나 시약장, 노트북이나 도서·VOD 구매 등까지 모두 가능해 협력학교가 많고 적음에 따라 협력학교별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협력학교 수가 적거나 사업 수요가 낮은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21) 「2022학년도 영재교육 세부추진계획」(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2022.2.)

22) 「2022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협력학교 시설 현황(2022.7.14. 기준)」(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내부자료)를 분석, 정리한 것임

23) 「2022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시설·환경 개선 계획(안)」(교육혁신과 인공지능·창의융합교육팀)

전자칠판 설치와 같은 사업이 가능하지만, 협력학교 수가 많거나 사업 수요가 높은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책걸상과 같은 기자재 구입 등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 협력학교 간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교육청이 제출한 「2022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협력학교 시설 현황」을²⁴⁾ 보더라도 영재교육원 협력학교 112개교 중 17개교가 시설 노후화나 전자칠판 설치, 노후PC 교체 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1개청 당 학교급별 2천만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현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경예산을 통해 급히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면밀한 수요 검토와 조사를 통해 영재교육원 협력학교의 시설 개선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기초학력향상지원 - 초등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356쪽)

(단위: 천원)

| 구분 | 2022년도 | | | 2021년도 |
|------------------|------------|-----------|-------------|------------|
| | 기정예산 (A) | 추경 증감 (B) | 추경 예산 (A+B) | 최종예산 |
| 계 | 11,911,293 | 1,807,392 | 13,718,685 | 13,280,011 |
| 서울학습도움센터운영 | 252,849 | 903,542 | 1,156,391 | 137,948 |
| 초1,2학년기초학력보장집중지원 | 7,922,740 | 500,000 | 8,422,740 | 8,074,780 |
| 초등전환기기초학력보장지원 | - | 376,000 | 376,000 | - |
| 교사의기초학력보장활동지원 | - | - | - | 1,650,000 |
| 학습상담운영 | 3,735,704 | 27,850 | 3,763,554 | 3,417,283 |

24) 「2022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협력학교 시설 현황(2022.7.14. 기준)」(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내부자료)를 분석, 정리한 것임

○ “기초학력 향상지원” 사업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에 협력교사를 배치하고,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 운영으로 학습 상담 지원 등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①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 지원(9억 4백만원)과 ② 기초학력 협력강사 인건비 부족분 증액(5억 원), ③ 지역학습도움센터 운영 지원(2천 8백만원) 등을 위해 본예산 119억 1천 1백만원보다 18억 7백만원이 증액된 137억 1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초등전환기 기초학력보장지원’ 사업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전환기 학생(초등학교 6학년) 중 기초학력 보장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입학 전인 1~2월에 각급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100개교에 각각 376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억 7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그러나 동 사업은 사업계획서²⁵⁾ 상 프로그램 담당 교원(담임 또는 교과전담교사) 수당이 전체 예산의 79.9%인 3억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프로그램 구성(안) 등을 포함한 사업내용이 불분명하여²⁶⁾ 사업의 효과성

25) 「초등 전환기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 계획서」(초등교육과 기초학력·방과후학교팀)

26) 계획서 상 동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및 예산(안)은 아래와 같이 계획되어 있음.

Ⅲ. 세부추진계획

○ 전환기 학습지원대상학생 프로그램 운영

- 기간: 차년도 1~2월

- 대상: 초등 6학년(초-중 전환기) 학습지원대상학생

- 내용: 단위학교별 담임 또는 교과전담교사의 전환기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Ⅳ. 예산

| 구분 | | 내역 | 금액(천원) |
|-------|-------|------------------------------------|---------|
| 운영비 | 운영수당 | (학습지원 교사 수당) 25,000원×40시간×100교×3명= | 300,000 |
| | 인쇄비 | (교재 인쇄비) 20,000원×300권= | 6,000 |
| | 일반수용비 | (학생 간식비 등) 500,000원×100교= | 50,000 |
| 업무추진비 | 협의회비 | (협의회비) 200,000원×100교= | 20,000 |
| | 합 계 | | 376,000 |

이나 타당성을 파악할 방법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 더욱이 교육청은 동 사업의 추정 사유로 제시된 3기 교육감 공약의 공약이행계획이나 예산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 이행을 이유로 동 사업의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동 사업의 예산 편성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을 기반으로 사업내용이 구체화된 이후에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교육감 임기 동안의 교육지표와 정책 방향,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출범준비위원회(공존교육전환위원회) 활동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²⁷⁾ 신규 공약사업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는 바 예산 편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원격교육지원 - 중등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378쪽)

(단위: 천원)

| 구분 | 2022년도 | | | 2021년도 |
|----------------------|------------|-------------|-------------|------------|
| | 기정예산 (A) | 추경 증감 (B) | 추경 예산 (A+B) | 최종예산 |
| 계 | 54,970,800 | △15,009,732 | 39,961,068 | 62,707,450 |
| 디지털기반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 | 54,685,410 | △15,012,072 | 39,673,338 | - |
| 원격교육네트워크 구축운영 | 285,390 | 2,340 | 287,730 | 336,010 |
| 블렌디드수업및교사 연수모형개발 | - | - | - | 62,331,440 |

27) 공존교육전환위원회는 제22대 교육감 출범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임기 4년 동안의 서울교육방향과 공약사업 실천 로드맵 구체화 등을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2022년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40일 동안 운영될 예정임 (자료 :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2022.6.15.일자), “조희연 교육감, 제3기 출범준비위원회 가동”)

- “원격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 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150억 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학생 1인당 1대의 스마트기기(태블릿PC)를 보급하는 ‘디지털기반학생맞춤형교수학습지원’의 사업 방식이 기기 구매에서 렌탈로²⁸⁾ 변경되고, 사업대상은 기존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의 증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 현재 교육청은 사업 방식 전환을 통해 스마트기기 구입 비용 521억 5천 8백만원을 감액하고, 기기 렌탈을 위한 운영비 310억 2천만원과 스마트기기 충전함 구입비 42억 6천 3백만원, 소프트웨어 보급 예산 19억 9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표-14] 추경예산안의 「디벗」 보급 관련 예산 증감 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성질별 세부내용 | | |
|----|-----------------|----------------------------------------------------------------------------------------------------------------------------------------------------------------|-----------------------|
| 감액 | · 운영비 | | |
| | - 연수용스마트기기환경구축비 | $\Delta 700,000\text{원} \times 25\text{대} \times 2\text{종} + \Delta 60,000\text{원} \times 25\text{대} \times 2\text{종} + 2,000,000\text{원} \times 10\text{청} =$ | $\Delta 400,000$ |
| | - 연수용스마트기기환경구축비 | $\Delta 700,000\text{원} \times 14\text{대} \times 2\text{종} + \Delta 60,000\text{원} \times 20\text{대} \times 2\text{종} + \Delta 1,951,180\text{원}$ | $= \Delta 23,951$ |
| | · 전출금등 | | |
| | - 학생스마트기기보급(국립) | $\Delta 700,000\text{원} \times (496\text{명} + 15\text{명}) + \Delta 750,000\text{원} \times 27\text{학급}$ | $= \Delta 377,950$ |
| | · 학교회계전출금 | | |
| | - 학생스마트기기보급(공립) | $\Delta 700,000\text{원} \times (51,222\text{명} + 1,537\text{명}) + \Delta 750,000\text{원} \times 2,041\text{학급}$ | $= \Delta 38,462,050$ |
| | - 학생스마트기기보급(사립) | $\Delta 700,000\text{원} \times (17,118\text{명} + 514\text{명}) + \Delta 750,000\text{원} \times 736\text{학급}$ | $= \Delta 12,894,400$ |
| | · 감액분 소계 | | $= \Delta 52,158,351$ |

28) 렌탈(rental)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한정된 종류의 범용성(汎用性) 있는 물건(자동차, 건설기계, 컴퓨터, 복사기 등)을 대여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소유권 양도 조건 유무에 따라 ‘반환형(단기/장기)’과 ‘소유권 이전형(사후관리 서비스 有/無)’으로 구분하고 있음
(자료: 홍정아·최지현(2015), 「리스 및 렌탈 용어와 소비자 보호 관련 쟁점」, <현안보고서> 274, 국회입법조사처, 8-9쪽.)

| 구분 | 성질별 세부내용 |
|----|--------------------------------------------------------------------------------------------------------------------|
| 증액 | · 운영비 - 학생스마트기기보급(중고) $188,000\text{원} \times (70,000\text{명} + 74,500\text{명} + 20,500\text{명}) = 31,020,000$ |
| | · 유형자산 - 학생스마트기기충전함보급(중고) $750,000\text{원} \times (2,804\text{학급} + 3,013\text{학급}) = 4,362,750$ |
| | · 무형자산 - 학생스마트기기SW보급(중고) $12,100\text{원} \times (70,000\text{명} + 74,500\text{명} + 20,500\text{명}) = 1,996,500$ |
| | · 증액분 소계 = 37,379,250 |
| | 증감 |

○ 그러나 현재 렌탈 방식을 전제로 학생·교원 대상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교육청은 전무한 상황이고, 국내 렌탈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동 사업의 규모가 대규모인 점과 렌탈 방식 전환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먼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2022)가²⁹⁾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의 디지털 디바이스 관리 현황 및 계획을 조사한 결과, 기기 소유권이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자에게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³⁰⁾

○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2026년까지 50만 대 이상의 태블릿PC를 렌탈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은 졸속 추진의 위험성이 크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항은 교육청의 내부 검토 과정에서도 제기되었던 바, 교육청은 렌탈 방식을 전제로 한 기기의 보급과 관리 전반에 대한 로드맵이나 관리체계가 부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 방식 전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9)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2022), 「디지털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의제 분석」, 61쪽

30) 렌탈의 특성 상 ‘반환형 렌탈’은 계약 종료 시 제품을 반납하게 되고, ‘소유권 이전형 렌탈’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이 소비자(계약자)에게 이관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렌탈 방식을 전제로 사업 운영을 하는 교육청은 없음

[표-15]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 디지털디바이스 관리 현황 및 계획³¹⁾³²⁾

| 시·도 교육청 | 소유권 | 분실 및 파손 책임 소재 | A/S 지원 방법 | 보관 (충전) 주체 | 관리 SW (MDM) 설치 여부 | 무선 네트워크 개방 수준 | 활용지침 마련 여부 |
|------------|----------|------------------|----------------------------|------------------|-------------------------|---------------------|---------------|
| 서울 | 학교 | 교육청 및 학생 | 권역별 A/S센터 | 학생 | YES | Filtering | YES |
| 부산 | 학교 | 교육청 또는 학교 | 교육청 통합지원 | 학교 | YES | Filtering | YES |
| 대구 | 학교 | 학생(~'21) | 학교별 유지보수업체 | 학교 | YES | Filtering | NO |
| | | 미정('22) | 교육청 통합지원 (학교별 수거 A/S) | | | | |
| 인천 | 학교(~'21) | 교육청 또는 학교 | 학교별 유지보수 업체 및 권역별 A/S센터 | 학교 | YES | Filtering | YES |
| | 미정('22) | 교육청 및 학생 | 교육청 통합지원 | 학교 | 미정 | Filtering | YES |
| 광주 | 학교 | 학교 자율 | 학교별 유지보수업체 | 학교 | YES | Filtering | YES |
| 대전 | 학교 | 교육청 또는 학교 | 학교별 유지보수업체 | 미정 | YES | Filtering | 미정 |
| 울산 | 학교 | 미정 | 학교별 유지보수업체 | 미정 | NO | Filtering | YES |
| 세종 | 학교 | 미정 | 미정 | 학교 | YES | Filtering | YES |
| 경기 | 학교 | 교육청 또는 학교 | 학교별 유지보수업체 | 학교 | YES | Filtering | YES |
| 강원 | 학교 | 교육청 또는 학교 | 학교별 유지보수업체 | 학교 | YES | Filtering | NO |
| 충북 | 학교 | 학생 | 권역별 A/S센터 | 학생 | YES | Filtering | YES |
| 충남 | 학교 | 교육청 또는 학교 | 교육청 통합지원 | 학교 | YES | Filtering | YES |
| 전북 | 학교 | 교육청 또는 학교 | 학교별 유지보수업체 | 학교 | YES | Filtering | NO |

31)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2022), 「디지털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의제 분석」, 61쪽의 표를 정리한 것임

32) 표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① '소유권'은 디바이스 보급 후 디바이스의 소유권을 갖는 대상을 의미함
- ② '분실 및 파손 책임 소재'는 디바이스 분실 및 파손 시 교육청 또는 학교 예산으로 부담하면 '교육청 또는 학교', 학생 개인이 부담하면 '학생'으로 분류함
- ③ 'A/S 지원방법'은 디바이스 고장 및 수리 필요 시 A/S 지원 방법을 의미함
- ④ '보관(충전) 주체'는 학교에서 디바이스 사용 후 수거하여 보관 및 충전하면 '학교', 학생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보관 및 충전하면 '학생'으로 분류함
- ⑤ '관리 SW(MDM) 설치 여부'는 보급되는 디바이스에 관리 소프트웨어(Mobile Device Management: MDM) 등이 설치되어 배포되는 경우 'YES', 관리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NO'로 분류함
- ⑥ '무선 네트워크 개방 수준'은 디바이스를 통해 접속하는 무선 네트워크가 유해 사이트 및 보안 위협 접근에 대한 필터링이 된 접속이면 'Filtering', 완전히 개방된 접속이면 'Free' 분류함
- ⑦ '활용지침 마련 여부'는 학생 디지털디바이스 활용 범위와 시간, 규칙 등을 담은 활용지침이 있거나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YES', 없으면 'NO' 분류하였음

| 시·도 교육청 | 소유권 | 분실 및 파손 책임 소재 | A/S 지원 방법 | 보관 (충전) 주체 | 관리 SW (MDM) 설치 여부 | 무선 네트워크 개방 수준 | 활용지침 마련여부 |
|------------|-----|------------------|----------------------------|------------------|-------------------------|---------------------|--------------|
| 전남 | 학교 | 학생 | 권역별 A/S센터 (업체에서 방문 A/S) | 학생 | YES | Filtering | YES |
| 경북 | 학교 | 교육청 또는 학교 | (초3, 중1, 고1) 교육청 통합지원 | 학교 | YES | Filtering | YES |
| | | | (초5, 중2, 고2) 권역별 A/S센터 | | | | |
| 경남 | 교육청 | 미정 | 통합관리지원센터 설립 | 학생 | YES | Filtering | YES |
| 제주 | 학교 | 교육청 또는 학교 | 학교별 유지보수업체 | 학교 | YES | Filtering | NO |

[표-16] 2023~2026학년도 디벗 보급 학생 기준인원 산출(안)³³⁾

| 구분 | 2023학년도 | 2024학년도 | 2025학년도 | 2026학년도 | 학교급별 소계 |
|----------|---------|---------|---------|---------|----------------|
| 초등학교 5학년 | - | 62,666 | 62,338 | 62,338 | 187,342 |
| 중학교 1학년 | 68,156 | 67,167 | 69,415 | - | 204,738 |
| 고등학교 1학년 | 72,412 | 68,541 | - | - | 140,953 |
| 연도별 합계 | 140,568 | 198,374 | 131,753 | 62,338 | 533,033 |

주) 학년별 교육정보통계(2021년 4월 기준)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임

[표-17] 구매 방식과 사업자임대(렌탈) 방식의 장단점³⁴⁾

| | 구매방식 | 사업자임대(렌탈)방식 |
|----|---------------------------------------------------------------------------------------------------------------------------------------------------------------|-------------------------------------------------------------------------------------------------------------------------------------------------------------------------------------------------|
| 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 자산으로 확보 1차 연도 지원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적 지원이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학생·학부모가 받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짐 기기 관리 및 유희기기 확보에 대한 학교의 책임과 업무가 경감 이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적기 납품이 가능하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음 |
| 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이후 업체의 대응이 소극적일 수 있고, 납품 지연에 대한 보상 체제 미흡 물품 관리에 대한 학교 부담 및 업무 가중 유희 기기 발생으로 관리 어려움이 따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용 태블릿PC 렌탈 사업 경험이 부족함 기존에 대규모 렌탈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보급·관리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함 |

33)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교육체제 기반 조성을 위한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 확대 계획(안)(서울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2022.6.)」 [붙임 1] “22~26 연차별 디벗 보급을 위한 기준 인원 산정” 자료를 정리한 내용임

34) 「2023 「디벗」 기기 보급 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 자료」(중등교육과 원격교육팀 내부자료)

- 둘째로 국내 렌탈시장³⁵⁾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연 최대 22만여 대를 학기 시작 전까지 일시에 조달해야³⁶⁾ 하는 등 사업의 경우, 대규모 렌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담합 또는 수의계약의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불어 동 사업이 기기 조달뿐만 아니라 배포, 전용 콜센터 및 수리센터 운영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는 더욱 한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2022학년도 사업을 위한 기기 구매에 있어서도 단독 응찰로 두 차례나 유찰된³⁷⁾ 끝에 수의계약으로 현재 사업자가 계약을 수주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업 방식 전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또한, 기기 소유권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기간(6년)에 비해 제조사의 부품보유 의무기간(4년)³⁸⁾이 짧아 사업자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의 사안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점, 렌탈 기간 중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된 이후 사업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5) KT경제경영연구소가 추산한 국내 렌탈 시장 규모는 2020년(예측) 기준으로 40조 원 규모로 이 중 PC나 사무기기 렌탈을 포함하는 '산업기계 및 장비 렌탈'은 11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되는 16만 5천명 분의 태블릿 PC 렌탈비용 310억 2천만원은 전체 시장의 0.26%를 차지하는 규모임 (자료 : 안혜영(2018), 렌탈업 동향과 소비트렌드 분석에 따른 향후 전망, <하나 산업정보> 11,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재인용.)

36) 디벗 확대 계획에 따르면, 2024학년도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교원(21.4. 교육정보통계 기준 28,813명) 등에게 배정이 이뤄져야 하므로, 학생용 19만 8,400여대와 교원용 2만 8,800여대 등 최소 22만 7천여 대 이상의 공급이 일시에 전개되어야 함

37) "2022학년도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 관련 기기 구매 입찰 공고 (긴급공고)" (입찰공고번호 20211126955 - 00,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제2021-50호) 및 "(재공고) 2022학년도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 관련 기기 구매 입찰 공고" (입찰공고번호 20211142156 - 00,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제2021-51호) 관련

3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I, 별표 II, 별표 III, 별표 IV와 같다.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품 목 | 품질보증기간 | 부품보유기간 |
|------------------------------------------------------------------------------------------------------------|--------|--------|
|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데스크탑(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 태블릿, 휴대용 음향기기(MP3,카세트, CD플레이어) | ○ 1년 | ○ 4년 |

3) 평생진로교육국

가) 체육관리(사업별 설명서 595쪽)

(단위: 천원)

| 구분 | 2022년도 | | | 2021년도 |
|--------|-----------|------------------|------------|-----------|
| | 기정예산(A) | 추경증감(B) | 추경예산(A+B) | 최종예산 |
| 계 | 5,280,830 | 7,500,000 | 12,780,830 | 3,861,330 |
| 체육교육관리 | 5,241,110 | 7,500,000 | 12,741,110 | 3,700,960 |

- “체육관리” 사업 중 ‘체육교육관리’ 사업은 학생들의 체력 저하 및 비만을 증가를 방지하고자 ‘디지털기반 스마트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7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디지털기반 스마트건강관리교실’ 사업은 학교 체력단련실 공간에 스마트 기기, 어플, 데이터 네트워크 등의 첨단 기술 장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기록하고 데이터를 누적 관리하며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자신의 신체 건강 수준을 파악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2022년도 본예산 대상학교 50교(교당 5천만원, 본예산액 25억원)의 3배에 해당하는 150교를 금번 사업대상에 추가로 포함한 것입니다.
- 그러나 금년 상반기의 사업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본예산 사업대상 50교 중 36교만이 사업을 신청하였고 이 중 30교만 선정되어 전체 계획물량의 60%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경예산안에 본예산의 3배에 해당하는 150교의 물량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본예산을 보충하는 성격을 갖는 추경예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에 따른 과도한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더욱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 확대는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학교청소관리(사업별 설명서 673쪽)

(단위: 천원)

| 구분 | 2022년도 | | | 2021년도 |
|---------|------------|------------|------------|-----------|
| | 기정예산(A) | 추경증감(B) | 추경예산(A+B) | 최종예산 |
| 계 | 10,402,242 | 11,458,793 | 21,861,035 | 9,863,277 |
| 미화원인건비 | 10,402,242 | 116,293 | 10,518,535 | 9,863,277 |
| 학교청소용역비 | - | 11,342,500 | 11,342,500 | - |

- “학교청소관리” 사업 중 ‘학교청소용역비’ 사업은 학생 및 교직원이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113억 4천 3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 ‘학교청소용역비’ 사업은 공립초등학교 566교 21,261실 및 특수학교 32교 1,424실에 실당 50만원(6개월분)의 청소용역비를 지원함으로써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2017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안성맞춤놀이환경조성’ 사업(초 1, 2학년 교실을 대상으로 실당 연 1백만원의 청소용역비 지원)을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전체 교실 및 특별·관리실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 및 교직원에게 부과된 청소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동 사업의 취지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동 사업은 3기 교육감 공약 중 일부로 아직 3기 교육감 공약이행계획 및 예산투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대규모 예산을 급히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을 보완하는 추경예산의 취지와 시급성 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교육행정국

가) 물품관리(전자철판설치)-교육재정과 (예산서 460쪽, 사업설명서 758p)

(단위: 천원)

| 구분 | 2022년도 | | | 2021년도 |
|-----------------|-----------|------------|-------------|------------|
| | 기정예산 (A) | 추경 증감 (B) | 추경 예산 (A+B) | 최종예산 |
| 계 | 2,540,900 | 52,450,000 | 54,990,900 | 31,612,900 |
| 물품관리 | 5,700 | - | 5,700 | 1,400 |
| 전자철판설치 | - | 52,450,000 | 52,450,000 | 28,761,000 |
| 전자태그기반물품관리시스템구축 | 2,535,200 | - | 2,535,200 | 2,850,500 |

- 물품관리 중 ‘전자철판설치’ 사업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국·공·사립(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및 각종학교(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전학년)에 전자철판을 설치하기 위해 524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표-18] 학교급별 전자칠판 설치 계획 현황

| 학교급 | 설립 | 설치 학교 수 | 설치 학급수 |
|-----------|-----------|------------|--------------|
| 중 학교 | 국립 | 1 | 8 |
| | 공립 | 248 | 1,982 |
| | 사립 | 89 | 566 |
| | 소계 | 338 | 2,556 |
| 고등학교 | 국립 | 2 | 7 |
| | 공립 | 79 | 709 |
| | 사립 | 148 | 1,421 |
| | 소계 | 229 | 2,137 |
| 특수학교 | 국립 | 2 | 38 |
| | 공립 | 11 | 222 |
| | 사립 | 12 | 257 |
| | 소계 | 24 | 517 |
| 각종학교 | 국립 | 1 | 3 |
| | 공립 | 1 | 3 |
| | 사립 | 3 | 29 |
| | 소계 | 5 | 35 |
| 총계 | | 597 | 5,245 |

○ 서울시교육청의 ‘전자칠판설치’ 사업은 2021년부터 4개년 동안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급에 전자칠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2,241억 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표-19] 전자칠판설치 연도별 추진 계획

(단위: 억원)

| 사업연도 | 사업대상 학년 | 대상 학급수 | 예산액 |
|------------|---------------------|---------------|----------------|
| 2021(사업완료) | 중1 | 2,878 | 256 |
| 2022 | 중2, 고1, 특수학교(전체) | 5,245 | 524.5 |
| 2023 | 초5, 중3, 고2 | 8,599 | 859.9 |
| 2024 | 초6, 고3 | 6,015 | 601.5 |
| 전체 | 초5~ 고3 | 22,737 | 2,241.9 |

- 그러나 동 사업은 4년에 걸친 중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부터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1차년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신규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도에 추진된 1차년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성과 분석 없이 설문조사만을 근거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는 전자칠판을 설치한 학교의 일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자칠판에 대한 사용 방식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자칠판 활용이 실제 교실 수업 및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³⁹⁾.
- 특히 동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서에는 전자칠판 설치 대상 및 예산 등 ‘설치’와 관련된 내용만 있고, 전자칠판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 이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은 미래 교육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대규모 물품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 집행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교육활동 실태 및 교육 성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바,

동 사업은 최소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칠판에 대한 사업 성과 평가 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9)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5월, 전자칠판을 설치한 학교를 대상(교사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를 결정, 금번 추경예산안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동 조사는 사업 수혜자 일부를 대상으로 사용 방식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인바, 전자칠판 활용에 대한 교육적 성과를 분석한 자료는 아님.

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교육시설안전과(예산서 527쪽, 사업설명서 780p)

(단위: 천원)

| 구분 | 2022년도 | | | 2021년도 |
|------------------|----------|---------------|---------------|-------------|
| | 기정예산 (A) | 추경 증감 (B) | 추경 예산 (A+B) | 최종예산 |
| 계 | - | 1,742,300,000 | 1,742,300,000 | 318,411,000 |
|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적립 | - | 1,742,300,000 | 1,742,300,000 | 318,411,000 |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장기간 소요되는 교육시설의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에 1조 7,423억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은 ‘교육시설환경개선(냉난방개선, 석면해소, 내진보강, 드라이비트해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 운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에 1조 5,213억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공간혁신’ 사업에 2,2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동 추경예산안의 87.3%를 차지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냉난방개선, 석면해소, 내진보강, 드라이비트해소)’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대상 학교의 냉난방개선 및 석면해소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추가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외단열시스템) 해소 사업을 위한 것인바,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4조40) 및 교육시설법 제31조41)에 따라 교육시설의 지진 및 화재, 안전

40)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교육시설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4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사고 대비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을 기금으로 조성한 것에는 별도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 그러나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의 예산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시설사업비⁴²⁾(2조 501억 4천 8백만원) 대비 74.2%에 이르나 동 사업은 시급한 시설사업이라기 보다 향후 2023년부터 2026년에 시행될 장래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실제 해당연도에 가용할 수 있는 시설사업비는 25.9%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표-20] 2022년 추경예산안의 시설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 | | 추경 증감액 | 비율 |
|--------------|---------------------------------|------------------|-------------|
| 교육비특별회계시설사업비 | | 308,848 | 15.1 |
| 기금 시설사업비 |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 1,521,300 | 74.2 |
|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공간혁신 ⁴³⁾ | 221,000 | 10.8 |
| 전체 | | 2,051,148 | 100.0 |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기금에 대규모의 시설사업비를 전출하기 이전에 다양한 분야에 시급한 시설사업이 없는지 재검토하고, 추경예산안 편성 시기로 인해 해당연도에 시설사업이 어려울 경우, 현재 3개 사업으로 구성된 기금편성 사업의 적절성을 재점검하여 서울시교육청 전체 시설사업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⁴⁴⁾ 및 교육시설법 제31조 제3호에⁴⁵⁾ 따르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42) 기금전출금 포함.

4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공간혁신 사업은 2022년 사업대상을 위한 예산임.

44)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따라 추진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BTL 사업을 추진하면서 2032년까지 총 임대료 1조 6,045억원 중,⁴⁶⁾ 2021년도까지 9,972억원을 상환하여 향후 10년간 6,073억원을 지급할 예정인바,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동 기금으로 BTL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1]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연도별 예산 운용 계획

(기준: 2021.12.31., 단위: 억원)

| 구분 | | 기상환액 | 상환예정액 | | | 총 지급 소요액 |
|-----|----|----------|--------|----------|-------|-------------|
| | | 2021년도까지 | 2022년도 | 2023년도이후 | 소계 | |
| 임대료 | 원금 | 5,477 | 618 | 4,806 | 5,424 | 10,901 |
| | 이자 | 4,495 | 140 | 509 | 649 | 5,144 |
| | 소계 | 9,972 | 758 | 5,315 | 6,073 | 16,045 |

V.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VI. 토론요지 : (생략)

VI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VIII. 심사결과 : 보류.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교육시설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4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2.(생략)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 6.(생략)

46) 운영비는 별도 상환.

IX. 부대의견 :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